

참가신청서

회 사 명		대 표 자 명	
주 소		전 화	
팩 스		홈 페이지	
담 당 자		직 위	
휴 대 전 화		E - mail	
주요전시품목			

전시부스 및 부대시설 신청내역

구분		신청내역	단가	신청금액
조기신청 9.10(화) 까지	독립부스(9㎡기준)	부스	₩ 960,000/부스	원
	조립부스(9㎡기준)	부스	₩ 1,200,000/부스	원
	프리미엄부스(9㎡기준)	부스	₩ 1,600,000/부스	원
일반신청 9.10(화) 이후	독립부스(9㎡기준)	부스	₩ 1,200,000/부스	원
	조립부스(9㎡기준)	부스	₩ 1,500,000/부스	원
	프리미엄부스(9㎡기준)	부스	₩ 2,000,000/부스	원
전 기	단상 220V	KW□	₩ 60,000/KW	원
	삼상 220V	KW□		원
	삼상 380V	KW□		원
	24시간(필요시 체크)	KW□	₩ 80,000/KW	원
전 화	국내용	대	₩ 80,000/KW	원
급배수		개소	₩ 200,000/대	원
인터넷		PORT	₩ 120,000/PORT	원
바코드시스템		개	₩ 150,000/대	원
소 계				원
부가가치세				원
합 계				원
입금계좌		대구은행 504-10-247270-6	예금주	마이스산업연구원

[전시회 참가규정]

제1조 용어의 정의

1. '전시회'라 함은 '2019 대한민국 어린이 엑스포'를 말한다.
2. '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회사, 조합,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3. '주최자'라 함은 '2019 대한민국 어린이 엑스포' 조직위원회를 말한다.

제2조 참가신청

1. 전시자는 참가 신청서를 '2019 대한민국 어린이 엑스포' 조직위원회(사무국)에 정해진 일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전시자는 참가신청과 동시에 계약금 50%를 납입하여야 하며, 잔금은 정해진 일자까지 전액 납입하여야 한다.
3. 전시자가 계약금이나 잔금을 지정된 기한 내 납입하지 않은 경우, 주최자는 참가약정을 해지 및 전시참가를 임의 배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 납입한 참가비 및 부대비용은 일절 반환되지 않는다.

제3조 부스위치 배정

1. 주최자는 부스 참가규모, 신청순위, 전시품을 기준으로 부스 배정 및 위치를 선정할 권한을 갖는다.
2. 주최자는 전시회 준비기간 이전이면 전시자 에게 할당된 부스를 변경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동 변경의 결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4조 설치 및 철거

1. 설치 및 철거는 주최자가 규정한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지연에 따른 손실이나 전시장에 대한 손상 발생시 전시자는 주최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2. 전시자는 전시품 및 전시장치를 시공에 관한 자료와 전시회 홍보에 필요한 정보를 주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 보험, 보안, 및 안전

1. 주최자는 전시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전시자는 전시기간은 물론 설치 및 철거기간동안 배당된 면적 내에 발생하는 전시품 및 장치물에 대한 훼손이나 도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전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화재, 도난, 파손, 안전사고, 기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배상 등 일체의 책임소재는 전시자에게 전적으로 귀속되며, 주최자는 이를 책임지지 않는다.
4. 전시회와 관련하여 전시자가 방문객 등 제3자와 민·형사상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배상 등 일체의 책임소재는 전시자에게 전적으로 귀속되며, 주최자는 이를 책임지지 않는다.

제6조 전시장 관리

1. 전시자는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전시부스에 배치하여야 한다.
2. 전시자는 배정된 전시공간을 벗어날 수 없으며, 주최자는 전시회의 성격과 부합되지 않는 전시품에 대하여 전시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전시회 취소 또는 변경

1. 주최자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단, 불가항력 등 주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 개최일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으며, 이 경우 전시자는 주최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8조 양도 및 전대

전시자는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조직위원회(사무국)의 승인 없이 신청부스를 타 업체에 양도 혹은 전대할 수 없다.

제9조 계약 취소 및 철회

1. 전시자가 배정된 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 사용을 거절하거나 지불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주최자는 즉시 계약을 종결할 권리가 있으며, 계약 종결시 납입한 부스비 및 부대시설비는 반환되지 않는다.
2. 전시자가 참가신청서를 제출 후, 참가 취소할 경우 전시자는 주관자에게 서면으로 취소 통보를 해야하며, 다음에 정한 위약금 상당액을 참가 취소 후 15일 이내에 주최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 행사 시작일로부터 100일 이전 참가취소 : 총 참가비의 50%를 위약금으로 납부
 - 행사 시작일로부터 50일 이전 참가취소 : 총 참가비의 80%를 위약금으로 납부
 - 행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전 참가취소 : 총 참가비의 100%를 위약금으로 납부
 - 위약금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3. 전시자가 주최자의 승인 없이 참가를 취소하는 경우, 전시자가 이미 납부한 금액은 반환되지 않는다.

제10조 보충규정

1.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전시자는 해당 전시장 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11조 분쟁해결

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주최자와 전시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간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을 따른다.